

# 교원양성 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08. 3. 1

제1조(설치) 본 대학교의 교직과정(대학, 교육대학원)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.

제2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, 운영,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기능)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육과정의 개발·편성 및 운영
2.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
3. 학점과 성적에 관한 사항
4. 교육실습에 관한 사항
  - 가. 실습시기, 실습교 선정 의뢰
  - 나. 실습교 방문, 실습생 지도
  - 다. 실습비의 책정 및 사용
5.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1인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시킨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(또는 교육대학원장)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 (임기) 이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6조 (회의) ① 이 위원회는 연1회(학년초)의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 교직교육위원회 규정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.